

步·向上을圖謀하여國家産業의發展에寄與하게함을目的으로한다

第二條 (登錄의對象) 物件의形狀·構造 또는物件을組合하여産業에利用할수있는新規한技術考案을한者는그考案에對하여實用新案의登錄을받을수있다

第三條 (不登錄事由) 다음에揭記하는實用新案에對하여는登錄하지아니한다
一、國旗 또는勳章과同一하거나類似한形狀을 가진것
二、秩序 또는風俗을紊亂하게하거나衛生을害할念慮가 있는것

第四條 (新規性의定義) 本法에서新規한實用新案이라함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一、登錄出願前에國內에서公知되었거나 또는公然히使用된것과이와類似한것

二、登錄出願前國內에서頒布된刊行物에容易하게實施할수있는程度로記載된것과이와類似한것

第五條 (前條의例外) 實用新案登錄을받을權利를 가진者의意思에反하여그考案이前條各號의一에該當하게된境遇에는그날부터六月以內에出願하던그考案은新規한것으로본다

第六條 (先出願優先主義) 同一 또는類似한實用新案에對하여는最先出願

者에限하여登錄한다 但同日에二以上の出願이競合하였을때에는出願者의協議에依하여그中一人만을登錄하며協議가 이루어지지아니할때에는도登錄하지아니한다

第七條 (一考案에對한出願) 實用新案登錄出願은一考案에對하여一出願으로한다

第八條 (出願變更) ①特許出願者 또는意匠登錄出願者가特許出願 또는意匠登錄出願을그出願된形狀·構造에對하여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變更하고자할때에는特許出願 또는意匠登錄出願을한것으로본다 但特許出願 또는意匠登錄出願에對하여特許 또는意匠登錄의拒絕査定을받은境遇에그最初經過한後에는例外로한다

②前項但書의期間이延長된때에는第二十七條의審判請求期間도延長된것으로본다

③特許出願 또는意匠登錄出願이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變更된때에는그特許出願 또는意匠登錄出願은이를取下한것으로본다

第九條 (先出願者의登錄) 特許出願인發明과實用新案出願인考案이同一한境遇에는最先의出願者에限하여特許 또는實用新案의登錄을한다

第二章 實用新案權

第十條 (實用新案權의發生과內容)

①實用新案權은登錄에依하여發生한다

②實用新案權은그登錄한實用新案의物件을業으로製作·使用·販賣 또는擴布하는權利를獨占한다

③實用新案權이그出願된意匠權과抵觸되는境遇 또는그出願前에出願한特許發明이나登錄意匠을利用하는境遇에는實用新案權者는特許權者 또는意匠權者의實施許諾이 없으면그實用新案을實施하지못한다

第十一條 (先使用者의法定實施權) 實用新案登錄出願當時에善意로國內에서그實用新案實施事業을하거나事業設備를 가진者는그登錄實用新案에對하여事業의目的인實用新案의範圍內에서實施權을 가진다

第十二條 (登錄無效審判請求登錄前의實施權) ①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는者로서登錄의無效審判請求의登錄前에善意로國內에서그實用新案實施事業을하거나 또는事業設備를 가진者는그登錄實用新案에對하여事業의目的인實用新案의範圍內에서實施權을 가진다

一、同一 또는類似한實用新案에對하여二以上の登錄中그一이無效로된境遇에登錄을받은原實用新案權者

二、登錄을無效로하고同一 또는類似한實用新案에對하여正當權利者에게登錄을한境遇에原登錄을承繼하여그登錄을받은者

三、前二號의境遇에 있어서無效로된實用新案權에對하여實施權을取得하고그登錄을받은者 但實施權이登錄없이第十七條第二項의規定에依한效力이 있는境遇에는登錄을要하지아니한다

②實用新案登錄出願日前 또는이와同日出願으로그期間이滿了한境遇에그特許權 또는意匠權에對하여實施權을取得하여登錄을받은者는그實用新案權과抵觸하는特許權 또는意匠權의存續期間은그登錄實用新案에對하여原實用新案範圍內에서實施權을 가진다 但原實施權이登錄없이特許法第五十五條第二項 또는意匠法第十八條第一項의效力이 있는境遇에는登錄을要하지아니한다

第十三條 (原特許權者·原意匠權者의實施權) 實用新案登錄出願前의出願 또는이와同一出願인實用新案權과抵觸하는特許權 또는意匠權의存續期間이滿了된境遇에는原特許權者 또는原意匠權者는그登錄實用新案에對하여原權利의範圍內에서實施權을 가진다

二〇二六一二〇〇

는 그査定 또는 審決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三十日 以內에 抗告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但前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額의 審判 및 第二十八條에서 準用되는 特許法 第四十四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費用의 審判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 다

第二十八條 (準用規定) 特許法中 第六條乃至 第三十六條, 第四十四條, 第四十五條, 第四十七條, 第五十條乃至 第五十二條, 第五十四條, 第五十六條乃至 第六十條, 第六十二條, 第六十三條, 第六十七條乃至 第七十一條, 第七十三條, 第七十四條, 第八十六條乃至 第八十八條, 第九十條乃至 第一百十三條, 第一百五條, 第一百十六條, 第一百十八條乃至 第一百十九條의 規定은 意匠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但 特許法 第四十四條 및 第四十五條에서 第五十三條라 함은 意匠法 第七條를 말한다.

第五章 罰 則

第二十九條 (罰則) ①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三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一, 他人의 登錄 意匠인 物件과 同一인 是類似한 物件을 業으로 製作, 使用 販賣 또는 擴布한 者
- 二, 他人의 登錄 意匠인 物件과 同一인 是類似한 物件을 業으로 輸入한 者

는 類似한 物件을 業으로 輸入한 者 ② 前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이를 論한다

第三十條 (同前)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一, 詐僞의 行爲로써 意匠의 登錄을 받은 者
- 二, 登錄 意匠이 아닌 物件 또는 그 物件의 容器, 包裝類에 意匠 登錄 標識를 붙이거나 意匠 登錄 標識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한 者
- 三, 登錄 意匠이 아닌 物件 또는 그 物件의 容器, 包裝類에 意匠 登錄 標識와 混同되기 쉬운 表示를 한 者 販賣 또는 擴布한 者
- 四, 登錄 意匠이 아닌 物件을 製作, 使用, 販賣, 擴布하기 爲하여 廣告, 看板, 標札의 類에 그 物件이 登錄 意匠인 것같이 表示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表示를 한 者

第三十一條 (沒收等) ① 第二十九條 第一項에 揭記한 行爲를 組成한 物件 또는 그 行爲로 부터 生한 物件은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物件을 被害者에게 交付할 것을 言渡할 수 있다.

② 被害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物件의 交付를 받았을 境遇에 그 物件의 價格을 超過하는 損害의 額에 限하여 賠償 請求를 할 수 있다.

第三十二條 (僞證의 罪) 法律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 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局 또는 그 囑託을 받은 法院이나 官廳에 對하여 虛僞의 陳述을 할 때에 是六月 以上 五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② 前項의 罪를 犯한 者가 査定 또는 審判이 確定되기 前에 自首한 때에 是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三十三條 (秘密洩泄罪) 特許局 職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가 職務上 知得한 意匠 登錄 出願中의 考案 또는 意匠 出願者의 秘密을 洩泄하거나 盜用한 때에 是 二年 以下의 懲役 또는 三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第三十四條 (過料) 民事訴訟法 第七十一條 第二項 또는 同法 第三百二十九條의 規定에 依하여 宣誓한 者가 特許局에 對하여 虛僞의 陳述을 한 때에 是 五萬圓 以下의 過料에 處한다.

第三十五條 (同前) 特許局으로 부터 證人, 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서 召喚된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召喚에 應하지 아니하거나 그 義務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是 五萬圓 以下의 過料에 處한다.

第三十六條 (同前) 特許局으로 부터 證據調査에 關하여 書類 其他의 物의 提出 또는 提示의 命令을 받은 者가 正當한 理由없이 그 命令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 是 五萬圓 以下의 過料에 處한다.

第三十七條 (同前) 非訟事件 手續法 第二百六條乃至 第二百八條의 規定은 前條의 過料에 이를 準用한다.

附 則

①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法令) 軍政法令 第九十一號 特許法中 美匠에 關한 規定은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規定) 本法 施行 當時 繫屬中인 意匠 審判 및 其他의 節次는 舊法에 依한다.

④ (同前) 本法 施行 當時 舊法에 依한 特許權의 存續 期間은 舊法에 依한다.

國家 再建 最高會議의 議決로 確定된 實用 新案法을 이에 公布한다.

大 統 領 尹 潁 善 團

檀紀 四千二百九十四年 十二月 三十一日

內 閣 首 班 宋 堯 讚

商 工 部 長 官 丁 來 赫

● 法律 第九五二號

實用 新案法

第一章 總 則

第一條 (目的) 本法은 實用的인 考案을 獎勵, 保護, 育成함으로 技術의 進

三、前二號의 境遇에 있어서 無效로 된 意匠權에 對하여 實施權을 取得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但 實施權의 登錄이 第十八條 第一項의 效力이 있는 境遇에는 登錄을 要하지 아니한다

② 意匠 登錄出願前 또는 이와 同日 出願으로 그 意匠 權과 抵觸하는 實用 新案權의 存續期間이 滿了한 境遇에 있어서 그 實用 新案權에 對하여 實施權을 取得하여 登錄을 받은 者는 그 登錄 意匠에 對하여 原 實施權의 範圍內에서 實施權을 가진다 但 實施權이 實用 新案法 第十七條 第二項의 效力이 있는 境遇에는 登錄을 要하지 아니한다

③ 前二項의 實施權者는 그 意匠 權者에 對하여 相當한 補償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存續期間) ① 意匠 權의 存續期間은 登錄한 날로부터 八年으로 終了한다

② 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하는 特許法 第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正當權利者에 對하여 登錄을 한 때에는 前項 八年의 期間은 無效로 된 登錄의 登錄된 翌日로부터 起算한다

第十六條 (利用 意匠의 境遇의 實施 特許의 範圍) 意匠 權者는 他人의 特許權, 登錄 實用 新案權 또는 登錄 意匠 權을 實施하지 아니하고서 自己의 登錄 意匠 權을 實施할 수 없는 境遇에 그 他人의 正當한 理由없이 實施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他人의 實施 許諾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但 그 實施를 要하는 意匠이 特許權, 實用 新案權 또는 意匠 權發生日로부터 二年이 經過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七條 (實施 權者의 補償義務) ① 前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 權者는 特許權者, 實用 新案權者 또는 意匠 權者에 對하여 相當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實施 權者가 自己에 對하여 負擔할 수 없는 事由에 依하여 그 補償金을 支給할 수 없을 때에는 그 金額을 供託하고 그 登錄 意匠을 實施할 수 있다

第十八條 (實施 權의 登錄) ① 登錄 意匠 實施 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意匠 權을 그 後 取得한 者 및 그 意匠 權을 目的으로 하여 그 後 設定한 質權者에 對하여 도그 效力을 가진다

② 第十三條, 第十四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 權 또는 第二十八條에서 準用되는 特許法 第十五條 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實施 權은 그 登錄없이 前項의 效力을 가진다

③ 第十六條의 規定에 依한 實施 權은 그 登錄前에 設定한 質權者에 對하여 도그 效力이 있다

④ 特許法 第四十九條의 規定은 實施 權의 移轉, 消滅이나 處分의 制限 또는 實施 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 移轉, 變更, 消滅이나 處分, 制限에 對하여 도이를 準用한다

第十九條 (登錄 無效의 審判) ① 登錄이 다음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審判에 依하여 이를 無效로 하여야 한다 一, 登錄이 第二條, 第三條,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된 境遇 二, 登錄이 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三十六條의 規定에 違反된 境遇 三, 登錄을 받은 權利를 承繼하지 아니한 者 또는 登錄을 받은 權利를 冒認한 者에 對하여 登錄된 境遇 四, 登錄이 第二十八條에서 準用되는 特許法 第三十六條의 規定에 依한條約 또는 이에 準하는 것에 違反되어 登錄된 境遇에 있어서 그 違反이 前三號에 揭記한 것에 準할 때

第三條 登錄 意匠 權의 範圍의 確認 ② 前項 第一號의 無效 審判은 利害關係人 및 審査官에 限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 但 審査官은 第六條의 規定에 違反한다는 것과 第十九條 第一項 第三號에 該當한다는 理由에 依한 無效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③ 第一項 第二號의 確認 審判은 利害關係人에 限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 (補償金額의 審決) 前條의 審判에는 補償金額에 對하여 도 審決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條 (抗告 審判의 請求) ① 査定 또는 審判을 받은 者가 不服이 있을 때에

第二十二條 (意匠 公報) 特許局은 意匠 公報에 本法에 規定한 事項其他 登錄 意匠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이에 記載하여 發行한다

第二十三條 (登錄料) 意匠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錄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四章 審査 및 審判 第二十四條 (審査) 意匠 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審査官으로 하여금 이를 審査하게 한다

第二十五條 (審判의 請求 對象) ① 審判은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閣令의 規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다음 事項에 對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 一,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無效

第二十九條 (意匠 登錄 原簿) ① 特許局에 意匠 登錄 原簿을 備置하고 意匠 權 및 實施 權 또는 이를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 保存, 移轉, 變更, 消滅, 處分의 制限其他 法令에 定한 事項을 登錄한다

② 登錄에 關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二十一條 (意匠 登錄 證의 交付) 登錄할 것이라든가 査定이나 審決이 査定되었을 때에는 意匠 登錄 原簿에 記入하고 意匠 登錄 證을 發給한다

第二十二條 (意匠 公報) 特許局은 意匠 公報에 本法에 規定한 事項其他 登錄 意匠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이에 記載하여 發行한다

第二十三條 (登錄料) 意匠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登錄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四章 審査 및 審判 第二十四條 (審査) 意匠 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審査官으로 하여금 이를 審査하게 한다

第二十五條 (審判의 請求 對象) ① 審判은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閣令의 規定하는 것을 除外하고는 다음 事項에 對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 一,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한 登錄의 無效

第二十六條 (補償金額의 審決) 前條의 審判에는 補償金額에 對하여 도 審決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條 (抗告 審判의 請求) ① 査定 또는 審判을 받은 者가 不服이 있을 때에